

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	제	호
------	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2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사유

- 상모사곡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: 동사무소 통합이후 관할 구역과 인구증가 등으로 현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
-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 : 현 동사무소의 시설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
- 신평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: 현 동사무소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
- 인동 구평지구 민원출장소 및 공공시설 부지매입 : 인동동사무소의 민원실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구평·신평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원출장소 및 인접 사유지와 연계하여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
- 고아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: 고아읍 및 봉곡동의 인구 증가와 지역주민의 소방행정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아읍과 봉곡동에 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

2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】

☐ 상모사곡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

- 토 지 : 6필지 2,787m²
- 예정가격 : 976,000천원(공시지가 기준)
- 건 물 : 1,000m²(지하1층, 지상 2층)
- 사 업 비 : 2,137,000천원

☐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

- 건 물 : 1,480m²(지하1층, 지상4층)
- 사 업 비 : 2,680,000천원

☐ 신평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

- 토 지 : 2필지 338m²
- 예정가격 : 152,100천원(공시지가 기준)

☐ 인동 구평지구 민원출장소 및 공공시설 부지매입

- 토 지 : 1필지 650m²
- 예정가격 : 656,000천원(공시지가 기준)

☐ 고아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

- 토 지 : 1필지 1,245m²
- 예정가격 : 249,000천원(공시지가 기준)

☐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

- 토 지 : 1필지 1,066m²
- 예정가격 : 548,000천원(공시지가 기준)

3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5조, 지방재정법 제77조,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천 원, m²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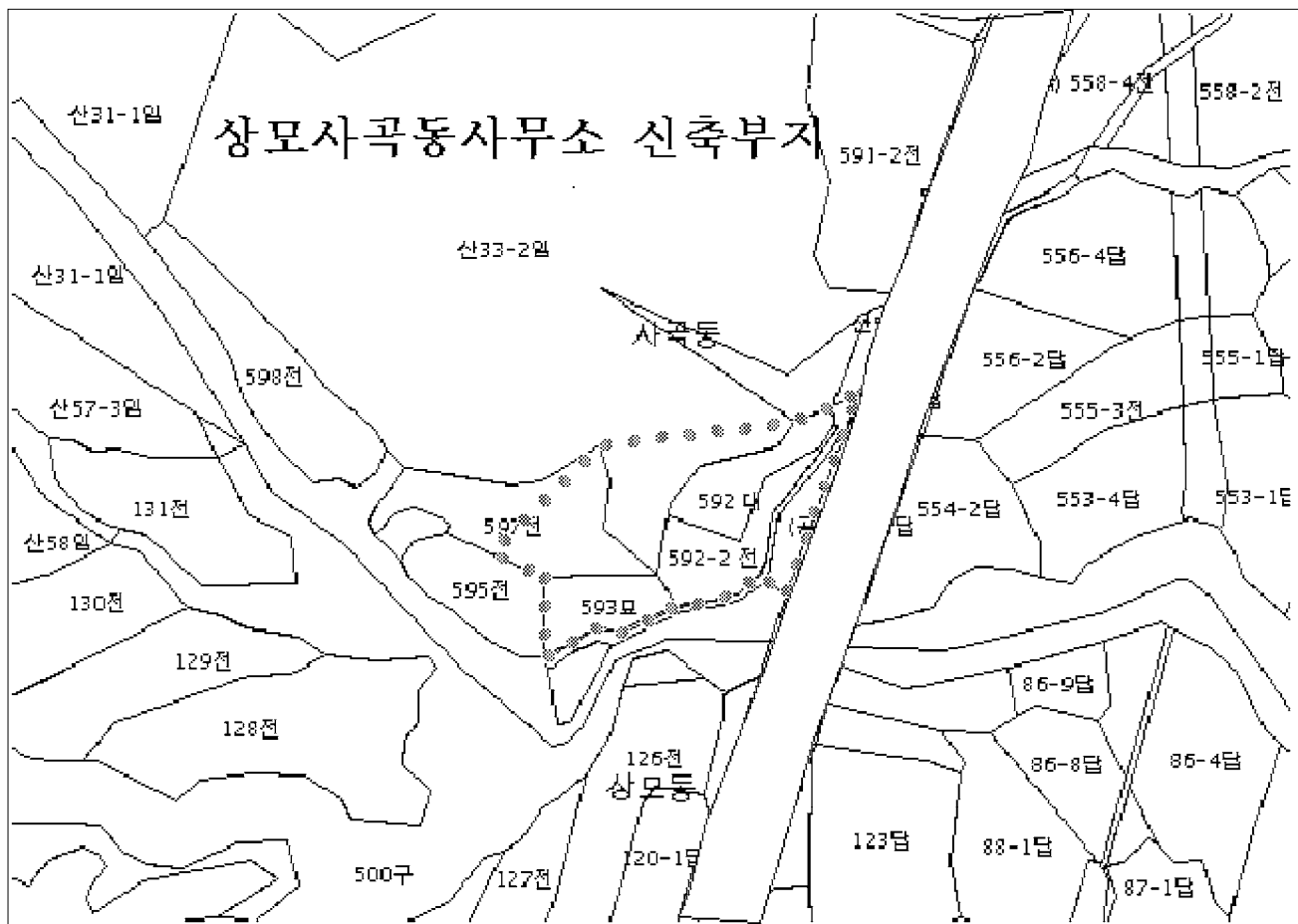
일련 번호	재산의 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, 성명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1	대지 등	사곡동592 외 5필지	2,787	976,000	2006년 하반기	상모사곡 동사무소 부지매입	도량동 이태연 등	
2	건물	사곡동592 외 5필지	1,000	2,137,000	2006년 하반기	상모사곡동 동사무소신축	구미시	지하 1, 지상 2
3	건물	원평동 1037-55외 1필지	1,480	2,680,000	2006년 하반기	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 회관신축	구미시	지하 1, 지상 4
4	대지	신평동 94-1외 1필지	338	152,100	2006년 상반기	신평2동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	대전시 서보근 외 4인	
5	대지	구평동 434-6	650	656,000	2006년 하반기	인동구평지구 민원출장소 및 공공시설부지매입	경북개발 공사	
6	답	고아 향곡 380-2	1,245	249,000	2006년 하반기	고아지구 소방파출소부지	남동동 정윤보	
7	대지	봉곡동 173-1	1,066	548,000	2006년 상반기	봉곡지구 소방파출소부지	밀양박씨 문중소유	
	계	7건	8,566	7,398,100				

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

□ 재산의 표시 : 상모사곡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

구 분	계	1	2	3	4	5	6
지 번	6필지	사곡동 산33-2	사곡동 554	사곡동 592	사곡동 592-2	사곡동 593	사곡동 597
지 목		임야	답	대	전	묘지	전
면적(m ²)	2,787	360	261	577	660	529	400

□ 위 치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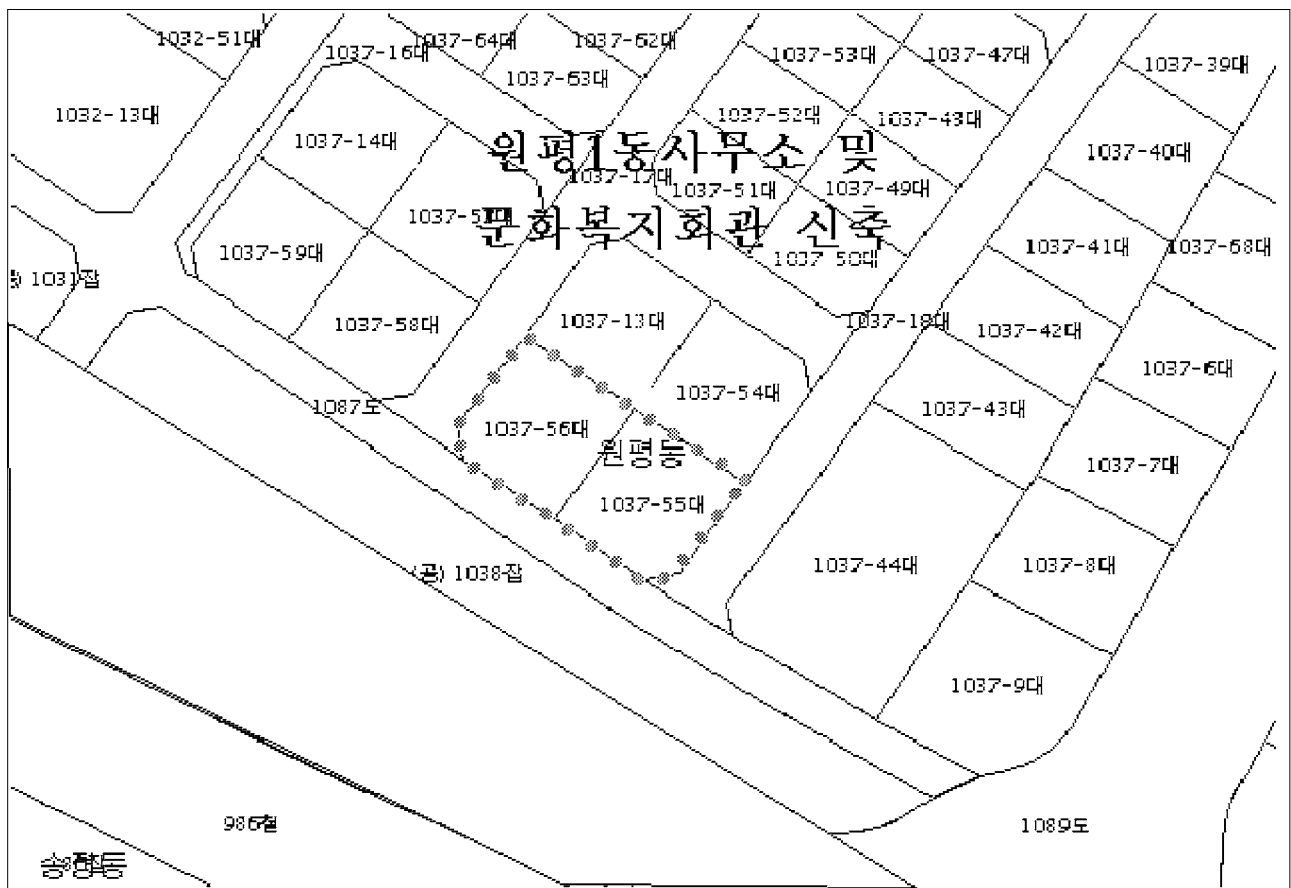


취득대상 건물

□ 재산의 표시 :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

- ▶ 구미시 원평동 1037-55, 1037-56
- ▶ 지목 : 건물
- ▶ 면적 : 연건평 1,480㎡ (지하1층, 지상4층)

□ 위 치 도



취득대상 토지

□ 재산의 표시 : 신평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

지 번	지 목	면 적(m ²)	비 고
계	2필지	338	
신평동 94-1	대	202	
신평동 94-2	대	136	

□ 위 치 도



취득대상 토지

□ 재산의 표시 : 인동 구평지구 민원출장소 및 공공시설 부지

- ▶ 구미시 구평동 434-6
- ▶ 지목 : 대지
- ▶ 면적 : 650m²

□ 위 치 도



※ 시유지 : 구평동 434-5번지 721m²

취득대상 토지

□ 재산의 표시 : 고아지구 소방파출소 부지

- ▶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380-2
- ▶ 지목 : 답
- ▶ 면적 : 1,245㎡

□ 위 치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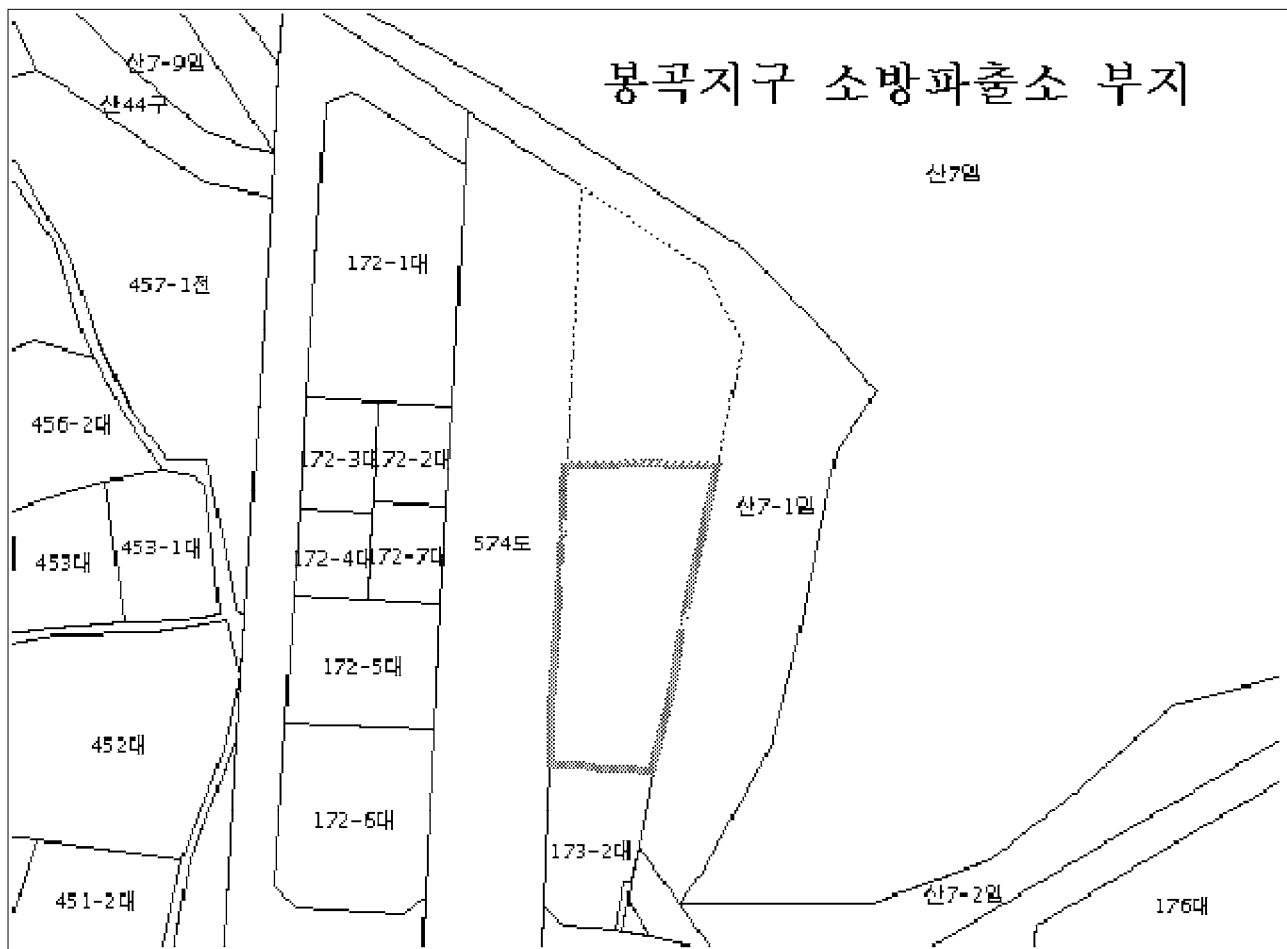


취득대상 토지

□ 재산의 표시 :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

- ▶ 구미시 봉곡동 173-1
- ▶ 지목 : 대지
- ▶ 면적 : 1,066㎡ (2,058㎡중 1,066㎡ 매입)

□ 위 치 도

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 의결 사항)

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<생략>
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재정법 제 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

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),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 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)

□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
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
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
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지방의회
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<삭제 1995.11.15>
- ③<삭제 1995.11.15>
-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
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